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정복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43

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문정복・민병덕・김문수

박상혁 · 김준혁 · 백승아

김영호 • 진선미 • 김용민

강준현 · 김한규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

그런데,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나,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환자 의 간호에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 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.

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6제2항제1호 중 "의료기관"을 "의료기관(이하 이 항에서 "의료기관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 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	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		
절차 등) ① (생 략)	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		
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			
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			
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			
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			
신고하여야 한다.			
1. 의료법 제3조제1항의 <u>의료기</u>	1의료기		
<u>관</u> 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	관(이하 이 항에서 "의료기		
인 및 의료기관의 장	관"이라 한다)		
<u><신 설></u>	1의2.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		
	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		
	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		
	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		
	<u>는 자</u>		
2. ~ 16. (생 략)	2. ~ 16. (현행과 같음)	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		